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

2. 신청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한글)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3. 인증 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에 []아니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	[]에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에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에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품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세관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2. 신청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영문란을 기재합니다.	
3. 인증요건	○ 인증요건 해당란에 “√” 를 기재합니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품목번호(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대상 신청품목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로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합니다.	
5.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